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5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이현승 · 정성국
박수영 · 나경원 · 윤영석
박준태 · 조배숙 · 주진우
최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,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려는 것임(안 제80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462호)과 「조세

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46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의2의 제목 중 “기회발전특구로의”를 “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다)”를 “한다) 또는 「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(이하 이 조에서 “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기회발전특구”를 각각 “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0조의2(<u>기회발전특구로의</u> 이 전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(이하 이 조에서 “기회발전특구”라 한다)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	제80조의2(<u>기회발전특구</u> 등으로 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한다) <u>또는 「부산 해양수도 이전기</u> <u>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</u> <u>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</u> <u>지정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</u> <u>(이하 이 조에서 “해양산업특</u> <u>화 혁신지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② 수도권(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 외한다)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 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 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의 <u>기회발전특구</u>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, 업종,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1. 2. (생략) ③ <u>기회발전특구</u>에서 공장을 신설·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. 이 경우 공장의 범위, 업종,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1. 2. (생략)	--<u>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</u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③ <u>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